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디자인심사기준

◇ 제·개정 이유

- 디지털 디자인 관련 기술발전과 변화하는 산업환경을 반영하고 내·외부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되는 화상디자인 심사기준 개정수요 반영

◇ 주요내용

가. 화상디자인의 ‘정의 및 성립요건’ 판단부분 개정

- 기기조작, 기능발휘 요건 완화
- 사례를 폭넓게 수록하여 다양한 화상디자인이 출원가능성 제시

나. ‘물품류 구분 및 명칭’ 부분 개정

- 시각저작물과 구분할 수 있는 정도면 모두 허용하는 포괄적인 명칭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완화

다. ‘유사성’, ‘창작성’ 판단부분 개정

- 화상디자인 vs. 물품디자인, 화상디자인 vs. 화면디자인間 신규성, 창작성 판단기준을 명확화하여 他물품 디자인과의 법리적 정합성 일치

라. ‘화상에 관한 디자인’으로 장(章)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 재배치

- ‘화상에 관한 디자인’으로 장의 명칭을 변경하고 ‘화상디자인’을 ‘화면 디자인’ 앞에 배치하는 등 세부 내용 재배치